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318호)
- 배진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454호)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543호)

2023.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	---

II. 주문 및 제안이유	2
---------------------	---

III. 검토의견	13
-----------------	----

[참고자료]

1. 정전협정 주요 내용	28
2. 북핵·미사일 발사 규제 관련 UN안보리 결의현황	29
3. 한반도 비핵화 관련 선언	30
4.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정 개요 및 진행상황	31

I. 제안 및 회부

1.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834호)

가. 제 안 자 : 이인영 의원 등 168인

나. 제안일자 : 2023년 7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19일

2. 배진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454호)

가. 제 안 자 : 배진교 의원 등 10인

나. 제안일자 : 2023년 7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27일

3.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543호)

가. 제 안 자 : 윤재옥 의원 등 112인

나. 제안일자 : 2023년 7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1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이인영의원안(의안번호 제14834호)

주 문

올해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임과 동시에 인류사적 과제이기도 함.

그동안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은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최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고 일관된 소명임.

이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넘어, 남북 당국이 4·27판문점선언에서 “중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음.

그동안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은 4·27판문점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 합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당면해서도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함.

이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

2. 배진교의원안(의안번호 제23454호)

주 문

한반도가 평화와 전쟁, 번영과 몰락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 당국은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공세적 핵 독트린을 천명하며,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미 당국도 연합훈련을 확대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한 끝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신냉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유사성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강대국의 지정학적 갈등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의 국토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냉혹한 신냉전 질서는 세력 갈등의 꼭지점에 위치한 대한민국에 차분하고 균형감 있는 외교정책을 요구한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유지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그 토대 위에서 국익의 추구도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번영의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핵 보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호전적이고, 무책임하

고, 무분별한 발언으로 외교 무대에서 사고를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한미일과 북중러 양 진영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이미 화약고라 불리는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스스로 건어삼은 물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케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꼴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윤석열 정부가 전개하는 편향된 외교정책, 무모한 안보정책이 초래할 위기를 상쇄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평화와 안정의 토대 위에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번영을 꽃 피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의 위협이 유지되는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평화회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특정 이념, 진영 또는 강대국에 대하여 그 수호자나 적대자가 되는 어떠한 길도 거부하며, 주변국들과 상호 호혜 평등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역사적 인연과 유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에 반하는 자체 핵 무장은 물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연동된 평화의 항구화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기 위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담대한 구상’을 향상하는 등,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과 하반기, 이전보다 확대·강화된 한미 연합연습이 또다시 일촉즉발의 무력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선제적 엄수, 한미연합연습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과 피해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세계가 또다시 ‘신냉전’이라는 적대적 대결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에 다시 지정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게 강대국 간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매우 신중하게 안전과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처지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호전적이고 무분별한 돌발적 발언으로 빈번한 외교 사고를 일으키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포위망 참여 시사 등의 지나친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진영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게다가 최근엔 독자적인 핵 보유까지 시사하면서

그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마저 훼손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군비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음.

이러한 외교정책이 불러올 위기를 상쇄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을 담보할 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의 외교를 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회의 역할이 절실함.

이에 정전 70주년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합의하고, 국회가 더욱 주도적으로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려는 것임.

3. 윤재옥의원안(의안번호 제23543호)

주 문

올해는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민간인 및 군인 사상자, 수십만의 전쟁고아와 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민족사 최대의 비극임.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정전체제의 원인 역시 전후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존속이 불가피한 실정임.

북한은 2022년 총 37회 79발의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라는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며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NLL이남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기도 했음. 금년에도 7월 27일 기준 총 17회 34발이상의 탄도·순항미사일과 우주발사체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술핵무기, 핵수중무인잠수정 등으로 대남 핵공격 의지를 피력하며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와 핵무기시험·생산·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할 것과, 남북 및 관련국이 북한의 핵폐기 및 사찰에 합의한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탄도·순항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임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함.

국회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탄도·순항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임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함.

국회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와 핵무기시험·생산·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할 것과, 남북 및 관련국이 북한의 핵폐기 및 사찰에 합의한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함.

국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 이인영의원안은 ①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함) 7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과 관련국이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②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각종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4·27판문점선언의 의미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④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 및 ⑤ 남북당국이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배진교의원안은 ① 정전협정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평화회담 논의를 시작하고 ② 주변국들과 상호 호혜 평등의 관계 속에서 유대를 강화하며, ③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를 위해 담대한 구상을 향상하는 등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④ 이전보다 강화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윤재옥의원안은 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②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③ 남북한 및 관련국이 기존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④ 군사 정찰위성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도발 및 7차 핵실험 등 모든 사태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⑤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⑥ 대한민국 정부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2. 검토 의견

가. 종합 의견

□ 6.25 한국전쟁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었음. 정전협정¹⁾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기초를 구성한 협정으로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

1) [참고자료 1] 정전협정 주요 내용

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²⁾를 구성하는 등 해당 관련국들의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전투행위를 종료시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음. 하지만 전쟁의 일시적 정지일 뿐 전쟁의 종결이나 평화상태 회복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제네바 정치회담, 남북고위급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관련국 간의 상호 입장 차이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임.

□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³⁾를 비롯한 다수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시도를 억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노력⁴⁾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탄도미사일 발사⁵⁾ 등 군사적 도발행위 및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⁶⁾ 등 각종 위협행위를 중단

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휴전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수립된 단체임. 정전협정에 따라 4개의 국가로 이루어졌으나, 중국과 북한에 의해 임명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냉전 이후 체코(1993.4), 폴란드(1995.2)는 강제 축출되고 현재 스위스, 스웨덴 대표만 각각 5명씩 상주하고 있음.

3) [참고자료 2] 북핵·미사일 발사 규제 관련 UN안보리 결의현황

4) [참고자료 3] 한반도 비핵화 관련 선언

5) 북한은 올해 기준 14차례에 걸쳐 총 25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2023. 8. 2. 기준)

- 신형 고체 ICBM(화성-18형 / 4.13 최초발사), 액체 ICBM(화성-15형/17형), 위성 명목 SLV(천리마-1형), SRBM(KN-23/25 등)

6) 북한, 2021.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군사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무기 개발 차원에서 전방위적 핵·미사일 활동 지속 중

- ①전술핵 개발(소형·경량화) 및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②15,000km 이내 미사일 명중률 제고 ③극초음속 활

하지 아니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고자 긴밀하게 한미,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의 정전협정 정신과 실체적 규정에 반하는 다양한 발언⁷⁾ 및 행위⁸⁾ 등으로 인해 정전협정 무력화 우려 및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거부로 대화국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

□ 3건의 결의안은 주문안의 주요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안된 취지는 유사함.

□ 이에 3건의 결의안을 통합하여 살펴본 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

공비행전투부 ④고체 ICBM ⑤핵잠수함.SLBM ⑥군사정찰위성

- 최근(7.12)에도 고체 ICBM을 발사하였으며, 소위 ‘위성’ 발사(5.31) 실패 후 빠른 시일 내 재발사를 예고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

7) 1994년 북한 외교부 대변인 발언 이후 다수의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 시도 발언

- “조선 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94.5.23 외무성 대변인 성명)

-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13.3.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8) 중부전선 GP 총격(20.5.3), 연평도 포격 도발(10.11.23), 천안함 피격 사건(10.3.26)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각종 도발 지속 감행

아 기존의 합의정신을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동시에 북한이 일체 군사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과 동북아 질서를 안정화 시킬 것을 촉구하는 취지는 의의가 있음.

나. 주문별 검토 의견

- 이인영의원안 주문 제1조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 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인영의원안]

1.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주문 중 “상호 적대행위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직접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촉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인영의원안 주문 제2조는 “남북당국과 미국정부가 기존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인영의원안]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 12·13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등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은 그 동안 기존의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합의를 파기하여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만 몰두하고 있음.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와 글로벌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다만, 기존 합의에 대한 미이행의 책임 주체가 북한임을 고려할 때 촉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윤재옥의원안 주문 제3조는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북한의 사찰에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윤재옥의원안]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와 핵무기시험·생산·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할 것과, 남북 및 관련국이 북한의 핵폐기 및 사찰에 합의한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주문 제3조 중 ‘6.15공동선언’은 남북한의 무력 불사용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에 북한의 사찰합의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이인영의원안 주문 제3조 및 배진교의원안 주문 제1조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인영의원안]

3.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 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넘어, 남북당국이 4·27판문점선언에서 “중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배진교의원안]

1.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의 위협이 유지되는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평화회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수행 중인 교전 쌍방 군사령관들 간에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임. ‘중전선언’은 전쟁 종결 및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않고,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과 평화상태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 조약의 지위에 해당함.⁹⁾

9) 도경옥,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2023.

정전체제를 종료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종전선언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¹⁰⁾에서 언급되었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¹¹⁾에 재차 거론된 바 있으며,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음.

2022년 1월 5일 프랑스 상원 크리스티앙 캉봉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¹²⁾을 발의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국 하원 외교위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2023년 3월 1일 “한반도 평화 법안”¹³⁾을 발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종전선언이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촉진할 수 있다¹⁴⁾”는 의견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전개되고 있으므로¹⁵⁾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상호 배치하고 있음.

10) 「10.4 남북공동선언(2007)」 제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11) 「4.27 판문점 선언(2018)」 제3조제3항: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이 결의안에는 “프랑스 정부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외교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13) 동 법안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4) 김준형·신범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찬반 논쟁」, 「아시아브리프 1권32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11. 8.

15) 도경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019. 4.17.

한편, 외교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는 정전협정 종료 또는 평화체제 구축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화된 단계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임.

□ 배진교의원안 주문 제3조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배진교의원안]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에 반하는 자체 핵 무장은 물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연동된 평화의 항구화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기 위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담대한 구상’을 향상하는 등,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비핵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며¹⁶⁾,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조치¹⁷⁾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16) 초기조치 중 하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상정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제재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동 대금을 활용해 식량·의료·약품 등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협상 단계에서도 보건·식수·산림 분야에서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비핵화 진전 단계에 맞추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음.

17) ○ 경제적인 상응조치: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사업,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농업기술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추진
○ 정치·군사적 상응조치: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등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 중에 있으나,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배진교 의원안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대한 구상을 향상하는 등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외교부는 “담대한 구상 아래 3D(억제,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대북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배진교의원안 주문 제4조는 “한미연합연습이 무력 대결 양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선제적 엄수, 한미연합연습 잠정 중단,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 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을 촉구”하고 있음.

[배진교의원안]

4.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과 하반기, 이전보다 확대·강화된 한미연합연습이 또다시 일촉즉발의 무력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선제적 엄수, 한미연합연습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을 촉구한다.

북한은 정전협정, 기존의 합의사항, UN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또한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동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 낙탄(2022.11. 2.) 및 소형 무인기 침범(2022.12.26.) 등 17건을 위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게 9.19 군사합의 선제적 엄수를 촉구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의 귀책사유가 우리 정부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 이인영의원안 주문 제4조 및 윤재옥의원안 주문 제5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인영의원안]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윤재옥의원안]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싱가포르 센토사(2018.6.12.), 베트남 하노이(2019.2.27.~28.), 판문점(2019.6.30.)에서 세 차례 정상회담이 진행된 바 있으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나,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상과 대북 제재완화의 정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¹⁸⁾

이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2019.10.)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현재 협상이 답보 상

18)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 역시 비핵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의 수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였음.

태에 있으며, 2022년 핵무기의 임의적 선제 사용 가능성을 규정한 핵무력정책법까지 제정하는 등 북핵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주문안은 의의가 있음.¹⁹⁾

□ 한편, 이인영의원안 주문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는 “남북 당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남과 북이 1991년 동시에 UN 회원국이 됨에 따라 UN 등 다자 관계에서는 국가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영토, 국민, 정부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및 대법원²⁰⁾과 헌법재판소²¹⁾ 판례 등에 근거할 때 북한은 우리 국내법상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음.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²²⁾과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²³⁾는 남한과 북한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⁴⁾

19) [참고자료 4]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정 개요 및 진행상황

20)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등)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

21)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등)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라고 판시

2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23)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주문 중: (전략)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후략)

문 의 처
02)6788-5263

24) 역대 남북한 간 주요 합의문서는 양측을 ‘남북’ 또는 ‘남북한’ 등으로 기술해 왔음.

[참고자료 1] 정전협정 주요 내용

○ (전문) 정전협정의 ▲체결목적 ▲기본성격 ▲적용범위를 규정*

* “최종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 /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 /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1조/MDL-DMZ) ▲군사분계선 · 비무장지대 설정 ▲비무장지대 內 적대행위 금지 ▲군사분계선 통과시 군사정전위의 허가 ▲비무장지대 출입시 지역사령관의 허가 등

○ (2조/정전조치) ▲정전조치 조항*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규정

* ▲일체의 적대행위 완전 정지 ▲일체의 군사역량의 비무장지대 및 상대방 후방 · 연해도서 · 연해로부터 철수, ▲한국 경외로부터 군사인원 증원 및 장비 · 무기 · 탄약 반입 정지 등

○ (4조/정치회담 건의) 협정 효력 발생 後 3개월 내 ▲쌍방 정치회의 소집 ▲외국 군대 철수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을 건의

※ 상기 외 전쟁포로(3조), 정전협정의 수정 · 증보, 발효(5조) 규정 有

[참고자료 2] 북핵·미사일 발사 규제 관련 UN안보리 결의현황

구 분	배 경	기본입장	주요제재
1695호 (2006. 7. 15.)	장거리미사일 발사 (2006. 7. 5.)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중단 요구 등	•북한 WMD 관련 재정적 자원 이전을 금지하고, 관련행위 감시 요구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2006. 10. 9.)	•핵실험 규탄 •비확산 및 평화안정 위협에 우려 표명	•7대 무기류 및 WMD 관련품목 거래 금지 등
1874호 (2009. 6. 12.)	2차 핵실험 (2009. 5. 25.)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모든 발사 중단 요구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 검색 •모든 무기관련 물질·기술 거래 금지
2087호 (2013. 1. 22.)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2.12.12.)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규탄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	•대량 현금 유통 감시·통제 •결의위반 품목 압류 및 처분 시 폐기 등 허용
2094호 (2013. 3. 7.)	3차 핵실험 (2013. 2. 12.)	•우라늄농축 포함 핵·미사일 활동 중단 요구 •비확산·평화안정 위협 핵실험에 우려 표명	•우라늄농축 관련물자 금수 •검색불응 선박 입항 금지 및 對北제재위 보고 의무화 등
2270호 (2016. 3. 2.)	4차 핵실험 (2016. 1. 6) /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 2. 7.)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무시로 이를 강력히 규탄	•WMD 개발 및 사용 가능 모든 물자 차단 •정부·노동당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등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 (2016. 9. 9.)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 이를 강력히 규탄	•석탄 수출 상한액·량 적용(4억불, 750만톤) •의심 선박 입항금지, 자산 동결 등
2356호 (2017. 6. 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 5. 14.)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완전 중단 촉구	•北 전략로켓사령부를 제재대상으로 선정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 검색
2371호 (2017. 8. 5.)	탄도미사일 발사 (2017. 7. 4, 7. 28.)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체 촉구	•北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2375호 (2017. 9. 12.)	6차 핵실험 (2017. 9. 3.)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	•원유수출 상한선(연간 정유 200만 배럴, 원유1년 수입량 초과금지) 설정 및 회원국 수출량 보고 의무화 •북한산 섬유제품 공급·판매 전면 금지 •北 해외 노동자 허가 금지
2397호 (2017.12. 23.)	화성-15형 발사 (2017.11. 29.)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 확인	•원유수출 상한선(연간 정유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 초과금지) 설정 등

[참고자료 3] 한반도 비핵화 관련 선언

문서	내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1.20.)	-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 및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시설 및 우라 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
미북 기본합의문 (제네바 합의) (1994.10.21.)	- 미국, 2003년까지 2000MWe 경수로 제공 및 완공 시까지 매 년 중유 50만 톤 규모의 대체에너지 제공, 관계 정상화 등 - 북한의 영변 핵 활동 동결 및 해체, NPT 잔류, IAEA 안전조 치 협정 이행, IAEA 정기·비정기 사찰 재개 등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 북한의 핵 포기,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 공약 - 대북 에너지 지원, 경제 협력, 관계 정상화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007.2.13.)	- 북한의 모든 핵시설 폐쇄·봉인, 북한 내 IAEA 요원 복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등 - 핵시설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지원 제 공, 관계 정상화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2007.10.3.)	- 북한, 2007.12.31.까지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완료 -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 등 대북 지원, 관계 정상화 등
2.29 미북 합의 (2012.2.29.)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및 영변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 IAEA 사찰단 복귀 동의 - 미국, 식량 24만 톤 상당의 대북 영양지원 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018.4.27.)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남북 공동 목표 확인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 (2018.6.12.)	-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 재확인
9월 평양공동선언 (2018.9.19.)	- 북한, 동창리 시설 영구 폐기 및 미국의 상응조치 이행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 지속 용의 표명

[참고자료 4]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정 개요 및 진행상황

□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2018.6.12. / 싱가포르 센토사섬)

- 공동합의문 도출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 「판문점 선언」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미 전쟁포로·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 2018년 7월 초 북미정상회담 합의이행을 위한 북미 간 후속협회가 진행되었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협상 교착
 - 북한은 ‘미군유해 55구 송환’ (7.27) 등 북미정상회담 합의·약속사항 일부 이행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2019.2.27. ~ 28 / 베트남 하노이)

- 합의 미도출
- 북미 양측 모두 대화재개 의지를 지속 표명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6.30)

- 한미정상회담 계기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시 역사상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 재개 표명

□ 북미 실무협상 진행(2019.10.4. ~ 5. / 스웨덴 스톡홀름)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예비접촉(10.4) 및 실무회담(10.5) 개최
- 실무협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였다는데 의의

□ 실무협상 이후 진행상황

- 북한은 2019년 하반기 지속적으로 “연말 협상 시한”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
 - 미국은 북한이 정한 인위적 시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
-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계기 한미 국방장관 ‘한미 연합공중훈련 유예’ 결정 발표(11.17) → 북미대화 재개는 불발
- 이후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12.28~31)를 통해 ‘정면돌파전’, ‘전략무기 개발 추진’ 등을 언급